

#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의 활성화 방안

글 이영규 KFPA 조사연구팀 수석전문위원, 공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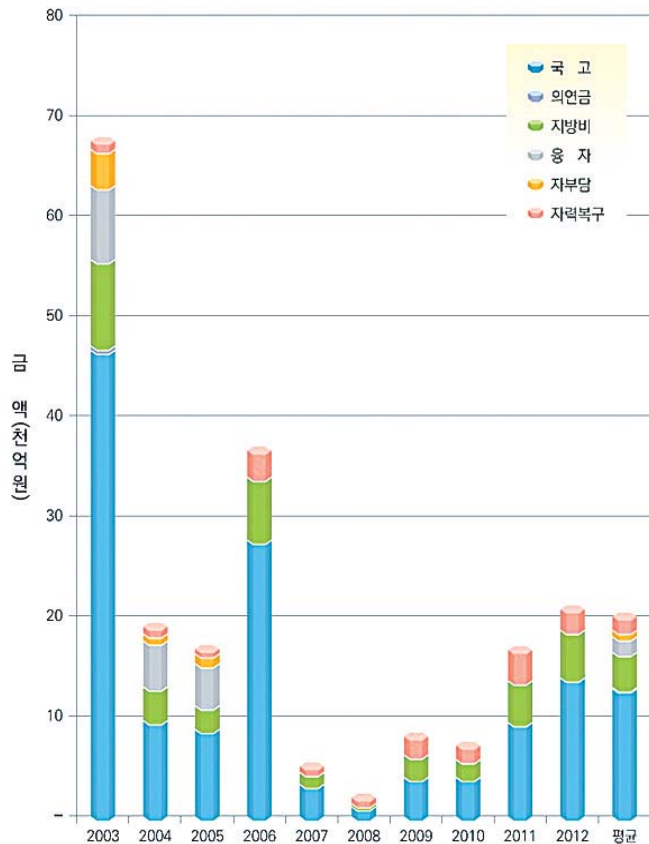
## 1. 머리말

방재(防災)란 재해(災害)를 막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방재는 인적·물적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건물의 화재 예방이나 침수 예방을 위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근 하천에는 제방을 쌓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림 1]은 최근 10년간의 연간 재

해 복구비를 보여준다. 2003년에는 거의 7조원에 달하는 복구비가 쓰인 반면, 2008년에는 약 0.2조원의 복구비가 쓰여 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등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평균 복구비의 약 80%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이 되고 있다. 등락폭이 큰 복구비는 예산 책정을 어렵게 만들며, 대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협을 방재만을 통해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간 재해 복구비 (재해연보 2012)

우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하는데, 때로 이와 같은 방재 조치가 오작동에 의한 수손 피해, 즉 또 다른 양상의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면 사람들은 제방 주변에 건물을 짓고 생활터전을 가꾼다. 이런 경우 제방이 붕괴되는 재해 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례로 2009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로 인한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New Orleans)를 들 수 있다.



[그림 2]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하여 2005년 9월 31일 뉴올리언스의 80% 지역이 침수.

[그림 2]에서처럼 뉴올리언스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전면적의 80%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 조치가 도리어 큰 피해를 키우는 형국이 될 가능성 또한 공존시키는 것이다.

방재를 통하여 재해 위협을 소탕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재해 발생 시 복구 대책 특히, 복구비 준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특수건물<sup>1)</sup>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법」을 통하여 정

〈표 1〉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양희산 2012) (단위: 건)

연도	계	주택	은실	축사
2011년	345,780	343,106	2,674	0
2010년	304,309	302,716	1,593	0
2009년	348,983	347,745	1,072	166
2008년	243,434	242,470	792	172
2007년	20,563	20,221	265	77
2006년	17,487	17,318	86	83

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은 풍수해보험의 연도별 가입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꾸준히 가입률이 성장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정체기에 들어서 있으며 이는 정부의 풍수해보험 사업지원예산이 담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정책성 보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양희산 2012).

풍수재<sup>2)</sup>를 담보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보험으로는 재물보험을 들 수 있으며 재물보험에는 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 화재보험에서 풍수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반면에, 종합보험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면책조항을 제외한 전위험을 담보하는 All Risk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민간부문의 풍수재담보 보험 또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해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는 예방과 복구를 함께 대비하는 것으로 방재와 보험을 함께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방재만을 강조하며 보험을 등한시하여 완벽한 재해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11층 이상의 건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말하며, 보다 자세한 정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풍수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관의 풍수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를 말하며, 풍수재 특약 가입 시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보상받는다. 풍수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풍수해"는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장에서는 재물보험, 특히 자연재해(풍수재) 관련 보험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보험자에 당부하는 제언을 기술한다.

## 2. 재물보험 현황

일반적으로 재해는 크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로 구분된다. <표 2>는 보험연구원(2013)이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당 가입률을 보여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률은 2013년 기준 44%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특히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에 대한 피해 대비를 위한 종합보험과 통합보험 가입률은 2013년 기준 최대 14%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재산보다 인명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중시하는 풍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재해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당 가입률(보험연구원 2013)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동차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기손해 상해보험	23.4	41.6	48.3	42.3	45.5	49.8	43.9	44.0
장기손해 건강보험	5.2	14.8	17.1	20.2	34.0	42.7	41.3	52.0
장기손해 종합보험 <sup>3)</sup>	3.3	9.3	6.3	5.8	5.9	7.1	6.1	6.6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0.8	3.4	2.9	2.8	2.0	3.5	4.0	4.2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3.7	5.8	7.3	8.3	5.6	6.4	10.2	5.0
상해보험	0.8	3.1	3.3	3.3	3.5	4.2	3.7	2.5
통합보험 <sup>4)</sup>	-	-	-	4.7	2.5	5.0	9.3	7.5

<표 3>은 2011회계년도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구성(보험개발원 2013)을 보여준다. 재물 관련 보험으로는 화재 및 종합보험이 포함되며, 장기보험 중 재물관련 일부가 포함된다. 화재보험의 수입보험료 시장은 약 2,500억원 규모이며, 종합보험은 약 13,50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물관련 보험 시장은 약 16,000억원, 손해보험의 구성비로는 2.7%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에 제시된 재물보험의 가입률을 감안한다면 재물보험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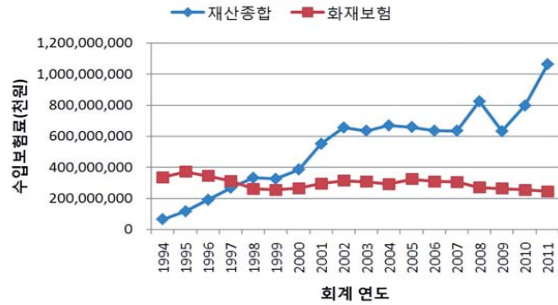
<표 3> 회계 연도 2011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구성(보험개발원 2013)

보험종목	수입보험료	구성비	
화재	2,448 억원	0.4%	
해상	6,044 억원	1.0%	
자동차	123,786 억원	20.8%	
보증	13,157 억원	2.2%	
특종	기술	2,924 억원	0.5%
	책임	5,562 억원	0.9%
	상해	13,687 억원	2.3%
	종합	13,452 억원	2.3%
	기타	6,898 억원	1.2%
장기	340,696 억원	57.2%	
개인연금	34,273 억원	5.8%	
퇴직연금	32,627 억원	5.5%	
합계	595,554 억원	100.0%	

3)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예) 재물, 상해 등

4) 상해, 질병, 화재, 재물, 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까지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기존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 Policy)을 계약자의 니즈에 맞게 개량한 상품

[그림 3]은 화재보험과 재물에 대한 종합보험인 재산종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화재보험의 성장은 정체 혹은 작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산종합의 성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약간의 정체기를 겪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화재보험처럼 단일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보다는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선호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표 4]는 국문화재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대상으로 풍수재담보 특약 가입률을 보여준다. 특수건물의 경우 비교적 높은 약 60%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비특수건물은 1%가 안 되는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의 주요 요인으로 화재보험요율 체계를 들 수 있다. 국문화재보험의 참조요율을 제공하는 화재보험요율서(2013)의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을 보면 주택의 경우 특수건물은 비특수건물보다 약 100배 저렴하며, 일반건물의 경우 약 20배, 공장건물의 경우 약 10배 정도 저렴하다. 단순히 특수건물이나 비특수건물이나에 따라 이와 같은 요율을 책정하는 보다는 풍수재 방재 정도가 반영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험이 방재를 장려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4] 국문화재보험 풍수재담보 특약 가입률 (보험개발원 2010-2013)

회계연도	특수건물	비특수건물
2008	58.8%	0.4%
2009	60.0%	0.5%
2010	53.9%	0.5%
2011	58.3%	0.4%

지금까지 재물보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물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상해보험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재해를 대비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일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보다는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수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험이 방재를 장려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재 노력 정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3.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의 활성화 방안

#### 가.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와 보험의 필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필요성 인식을 위해서는 방재와 보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방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레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관리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으로 위험관리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낮추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확률)을 낮추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방재 행위가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방재 행위는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관리는 특히 첨두(peak)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매달 5만원의 손실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일상적인 달에는 손실이 전무하다가 특정 달에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의 손실은 감당하기 쉬우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첨두 손실 관리를 위한 대책을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 관리를 위한 방재와 경제적 손실 관리를 위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A 사업장의 경우 방재 비용으로 연간 300과 연간 100의 보험료와 사고 시 최대 자기부담금 10으로 전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A 사업장의 연간 전위험수준을 410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는 개별 경제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이 다를 것이다. 위험관리의 성공 가늠은 각각의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까지 낮추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관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위험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의사결정자나 정책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방재가 아닌 위험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에 맞춰 연구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자는 재난관리 4 단계 중 복구에 대한 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는 재난지역 복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복구비 마련에 대한 별다른 대비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방재는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위험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게 복구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위험관리 수행을 제언한다. 홍경우(201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1~2010) 연간평균 약 1조7천억원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31.2%에 달한다고 한다. 복구비로는 연간 평균 2조7천억원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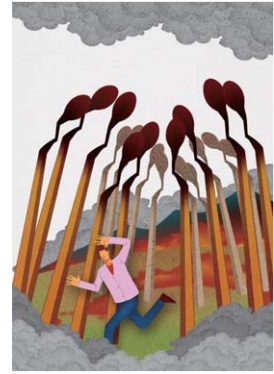
요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는 국고가 67%로 가장 높고, 지방비 14.8%, 용자 10.4%, 자력복구 4.1%, 자부담 3.4%, 의연금 0.3% 순으로 정부의 복구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정부 부담을 줄이고자 2006년도에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점은 보험을 위험관리 정책으로 반영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험으로써의 위험관리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무섭(2013)은 사회기반시설 보험가입 활성화 제언에서 2012년 기준 총 129개의 사회기반시설이 완성토목공사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사업이 67건(52%)으로 가장 많고, 도로 사업이 22건(17%), 항만사업이 13건(10%)으로 모두 민간투자시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 지자



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도로와는 달리 민자도로는 건설단계는 물론 운영 단계까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 받는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이 공공 시설에 대한 위험관리로써의 보험 정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험관리를 위한 공공시설 보험 정책이 선행되고 동일 논리가 사유시설에 적용될 때, 사유시설에 대한 보험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개인 TV 시청시간은 3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권호영 2012). 많은 정보의 통로가 TV가 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TV를 통하여 적잖이 손해보험의 광고를 접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이 건강 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한 것이며 재물보험에 대한 광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광고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에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심어줄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손해보험 종목별 가구당 가입률이 종목별 광고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위험이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자연재해 위험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상호 독립성이 낮아 대수의 법칙에 의한 객관적인 사고발생 확률 추정이 어렵다(홍경우 2012). 즉 [그림 1]에서 보듯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험금의 등락폭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한 위험 분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물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며, 정부가 공공시설까지 보험으로 확대한다면 재물보험에 대한 메리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재물보험은 위험이 큰 만큼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재물보험에 대한 광고 확대와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국민은 물론 정부, 기업의 재물보험 필요성 인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자연재해 담보 재물보험의 필요성 인식 고취 전략으로 여신과 연계하는 제도적 마련을 들 수 있다. 양희산(2012)은 정책자금 수혜 시 또는 금융기관 대출 시 풍수해보험 의무가입을 제안하였다. 장세훈(2009)은 미국 전체 주택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96%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주요 요인으로 미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점을 들었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파손에 따른 위험 대비 차원이라는 점도 곁들였다. KDB산업은행(2012)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규모는 390.8조에 이르고 있다.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대출 시 자연재해 담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재물보험 필요성 인식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며 보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나.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상품 전략

화재보험과 종합보험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 재해에 대한 보험상품은 해당 재해에 대한 고위험 고객만을 끌어들이는 개연성이 크며, 이는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 또한 크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경우(2012)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거지역의 고저, 주거형태, 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 등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가 큰 사람만 가입

하고 위험이 적은 사람은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역선택 문제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은 단일재해보험의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2009)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물보험 가입률 차이에 있어 또 다른 요인으로 보장 범위를 들었다. 미국의 경우 종합보험이 일반화되어 화재는 물론 폭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누수, 파손, 도난 등의 사고까지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종합보험으로 풍수재보험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자가 전위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전위험 언더라이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보험자는 종합보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연재해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에 대한 자연재해 유형별 재해지도(hazard maps)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재해지도 구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일례로 소방방재청은 2013-2017 간 35억을 투자하여 풍수해관리지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결과물을 보험산업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필자는 최근 국가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해지도를 정부에서 비공개 방침을 정하고 있어 보험산업 자체적으로 재해지도를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각 보험자가 자연재해 담보 언더라이팅을 위한 위험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보험자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자연재해 위험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각 보험자는 그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위험 관리 자료를 지원받아 보험자별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자연재해 담보 보험을 위한 위험관리 기관으로 KFPA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KFPA는 2012년 11월부터 자연재해전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풍수재 관련 재해지도(하천재해지도, 해일재해지도, 침수흔적지도, 강풍재해지도) 외 3개 재해지도(낙뢰재해지도, 태풍재해지도, 적설재해지도)를 포함한 7종 재해지도와 특수건물의 풍수재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풍수재위험도지수(이영규 등 2013a, 이영규 등 2013b) 서비스를 보험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관리 서비스는 2014년 9월 1일 시작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손해보험사에 무료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KFPA는 장기적으로 화재, 폭발, 풍수재, 낙뢰뿐 아니라 지진, 쓰나미,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위험에 대한 종합위험관리 서비스를 보험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다. 방재 장려를 지원하는 요율제도 확립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고의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정보를 고객이나 사회에 전파하고,



사고방지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보험요율서에서도 사고자와 무사고자를 구분하여 할인·할증제도를 도입으로써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조영삼 2013). 이와 같은 보험의 순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방재를 장려하는 제도를 화재보험요율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재보험요율서에서는 방재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지할인<sup>5)</sup>, 소화설비할인<sup>6)</sup>, 불연내장재할인<sup>7)</sup>을 제도화하고 있다. 공지할인은 건물 신축시 화재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장려하며, 소화설비할인제도는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장려하고, 불연내장재할인은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준다.

자연재해 담보의 경우에도 풍수재에 강한 인증 건축 자재 시공을 장려하고, 차수판 설치와 같은 풍수재 피해 최소화 설비 설치를 장려하는 요율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 국문화재보험요율서의 풍수재 특약 요율을 살펴보면 건물 업종(주택, 일반, 공장), 건물구조급수, 그리고 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의 등지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건물 건축이 완료되면 요율은 고정되어 풍수재 방재를 장려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방재는 위험요인도(hazard)에 따라 요구도가 달라져야 한다. 즉 건물이 하천 제방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 위험요인도가 높다면 차수판 및 펌프 설치 등의 강도 높은 방재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인근에 하천이 없으며 고지대 지역이라 침수 위험이 없다면 침수에 대한 방재 조치는 필요 없을 수 있다. 침수의 경우처럼 자연재해는 위험요인도에 맞는 방재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여 할인해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KFPA는 위험요인과 방재정도에 따라 풍수재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풍수재위험도지수(이영규 등 2013a, 2013b)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점검하는 모든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수재위험도지수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재위험도지수를 화재보험요율서의 풍수재담보 특약요율에 반영하여 방재 장려를 지원하는 요율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고자와 무사고자를 구분하여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와 같이 보험자가 사고DB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에 대해서도 풍수재를 비롯한 자연재해 사고DB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고자와 무사고자를 구분하여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수재 사고DB의 축적은 풍수재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자연재해 사고DB 집적은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 통계와 관련 산업의 영향 지수를 산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5) 건물 구조급수 3급 또는 4급 건물의 주위에 공지가 있고, 그 공지거리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건물 및 그 수용동선에 대하여 10%의 할인을 적용한다.

6)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설비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7) 구조급수가 1급 또는 2급의 건물로서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반자에 사용한 내장재가 방재시험연구원서 인증한 불연재료(FILK인증품)인 경우에는 5%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4. 맺음말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활성화 방안으로써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둘째는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상품 전략, 마지막으로 방재 장려를 지원하는 요율제도 확립이다.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방재에서 위험관리로의 프레임을 강조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먼저 위험관리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험자에게는 잠재력이 큰 재물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재물보험과 여신과의 연계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보험가입자는 전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험자는 종합보험 상품 마케팅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전위험 언더라이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지원 기관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종합위험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황을 전하였다.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에도 화재보험과 같이 방재를 장려하는 요율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수건물의 경우 KFPA에서 제공하는 풍수재위험도지수를 요율서에 반영하여 방재 장려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풍수재 사고DB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고자와 무사고자를 구분하여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자연재해 관련 재물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유관기관의 노력과 제도 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재물보험 시장 성장에 따른 보험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자연재해 위험관리 연구 확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1. KDB산업은행 (2012)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향 분석, 이슈분석, pp. 38-74
2. 권호영 (2012) 인터넷 매체의 확산과 TV 시청행태의 변화, 코가포커스 2012-13호 (통권 61호), pp.1-20.
3. 보험개발원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2009
4. 보험개발원 (2011) 손해보험통계연보 2010
5. 보험개발원 (2012) 손해보험통계연보 2011
6. 보험개발원 (2013) 손해보험통계연보 2012
7. 보험개발원 (2013) 화재보험요율서
8. 보험연구원 (2013)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2013-1, 보험연구원
9. 양희산 (2012) 풍수재보험 관련 정책성보험 추진방안, 월간손해보험, 2012년 6월호, pp. 10-31.
10. 이무섭 (2013) 사회기반시설 보험가입 활성화 제언, 월간손해보험, 2013년 9월호, pp. 14-27.
11. 이영규 (2013) KFPA 풍수재 재해지도, 재난안전, 제15권 제 4호, pp.72-77.
12. 이영규, 이철주, 안승일 (2013a) 풍수재위험도지수를 이용한 특수건물 진단,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3권 5호, pp. 9-16.
13. 이영규, 이철주, 안승일 (2013b) 수재에 대한 특수건물 진단을 위한 위험도지수 개발, 제13권 6호, pp. 29-37.
14. 장세훈 (2009) 한국서 가입률 낮은 화재보험, 미선 왜 인기?, 서울신문, 기사일자 2009-12-11.
15. 조영삼 (2013) 보험계약법(개정판), 보험경영아카데미
16. 홍경우 (2012)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풍수재보험과 나아갈 방향, 월간손해보험, 2012년 5월호, pp.2-15.